건 설 과

위원회별	소관부서	감사항목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계	완결(계속추진)	추진중	
산업건설위원회	건 설 과	13	7	7	6	1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 설 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17	수해복구공사 현지감사관련 지적사항 조치철저 - 요 구 이수정의원 정연명의원 조선제의원	<용암제3공구 수해복구공사> ○ 호안 돌쌓기 공사후 공간의 돌채움 공사시 부분적으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적은 돌로 채우는 등 마무리 공사가 부실하므로 부실부분에 대한 보완공사 실시할 것. <용암제4공구 수해복구공사> ○ 부분적으로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전석을 사용하였으며,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은 부분과 하천이 접하는 코너부분 시공 상태가 조잡한 것으로 부실시공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 바, 부실부분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시공 지시할 것.	<용암제3공구 수해복구공사> ○ 2004. 7. 14일부터 역T형 옹벽구간 법면 구배 완화 자연석쌓기 및 도수로하단 자연석 보강공사 시행 완료 <용암제4공구 수해복구공사> ○ 현재 전석규격 미달구간은 재시공 완료 (L=40.0m h=2.0~ 2.5m)	완 결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 설 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17	수해복구공사 현지감사관련 지적사항 조치철저 - 요 구 이수정의원 정연명의원 조선제의원	<감리감독 철저> ○ 수해복구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현장확인시 많은 부분에서 부실시공한 것으로 발견되는 등 감리가 부실한 상태인 바, 대부분의 수해복구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으므로 준공검사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감리감독을 강화할 것 ○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도 부실여부를 일제 점검토록 할 것.	<감리감독 철저> ○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검측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분에 대하여 재시공 등 과감한 조치로 부실시공 사전 예방 및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우기전 사업을 저네 마무리 하였음 ○ 준공된 시설물은 년2회이상 하자검사를 실시, 하자 및 부실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등 보완조치 추진완료	완 결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 설 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18	조사누락 수해시설 복구대책 마 련 - 요 구 이수정의원 정연명의원 조선제의원	○ 지난 수해피해조사에서 누락된 하천(용암제 4공구 하단부분, 남상 샛들하천)에 대하여는 추가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히 복구 대책을 마련 시공토록 할 것.	○ 용암제 4공구 누락부분에 대하여는 집행 잔액을 사용하여 복구 완료하였으며 ○ 남상 샛들소하천은 향후 재해예방 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시행계획임	완 결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 설 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19	월평경지정리 사업 현지감사 관련 지적사항 - 요 구 이수정의원 박점용의원	○ 영농의 기계화와 규모화를 위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용수로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경지는 양수기를 이용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등 예산의 효과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바, 향후 사업 시행시는 당초 계획한 목적과 맞지 않거나 사업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비 보조사업일지라도 취소토록 할 것	○ 본 지구는 체계적인 용배수시설 부족 및 수로의 대부분이 토공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면협소, 구배불량, 잡초번성, 수로 누수손실 등 용·배수로로서의 기능저하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로 용배수로 구조물화가 주민숙원사업이며, 현재 체계적인 용배수로 정비 및 구조물화로 주민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음. ○ 주 수원공인 우암보 구역 밖 일부 필지는 현지 여건상 과거에도 자연식 용수공급이 불가능하여 양수기를 동원 농사를 짓던 토지로서 현재에도 자연식 직접급수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거창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수혜구역으로 사업 완료 후 급수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완 결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 설 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19	월평경지정리 사업 현지감사 관련 지적사항 - 요 구 이수정의원 박점용의원	○ 우암보 용수로는 사용하지 않은 시설로써 금회 용수로배관을 설치한 후에도 수원이 없어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할 것.	○ 우암보 용수로가 아니라 돈두말보를 수원으로 하는 용수로로서 금회 용배수로관 시공 후에도 기설 용수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나 수로관리원을 두어 수로관리 하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거창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수혜구역임.	완 결	
		○ 농민들이 농지로 잠식하여 금회 시공하지 못한 남상지구와 월평회관앞의 용배수로 및 농로에 대하여는 토지가기 확보된 것으로 빠른 시일내 측량을 실시하여 농로 및 용배수로를 확보토록 할 것.	○ 농지로 잠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농로 및 용배수로 부지 확보함.		
		○ 동 사업은 사업이 준공단계인데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준공검사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	○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민원발생 예정사항 처리 및 민원사항 현지 처리 완료.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 설 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20	춘전-덕산간 도로공사 현지감사관련 - 요 구 정종기의원	○ 춘전-덕산간 군도확포장공사의 일부 구간중 낙석우려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할 것. ○ 동 사업장은 절개지의 경사가 심한관계로 낙석으로 인한 대형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산마루 측구부분에 대하여는 수시점검활동을 실시할 것.	○ 낙석 및 법면붕괴 위험지구 : 1개소(NO.139지점) 보강토옹벽 시공 및 암절개지 법면부 뜬돌 제거 및 우심구간에 대하여는 낙석 방지망, 방지책 시공조치 완료 ○ 산마루측구 시공이 필요한 구간 2개소에 대하여는 시공완료 하였으며 설치된 산마루측구는 정기 및 수시 점검 정비토록 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정기점검 : 분기 1회이상 - 수시점검 : 출장시 수시	완 결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 설 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21	위험교량 관리 철저 - 요 구 조선제의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중 안전점검 정밀검사결과 재가설이 시급한 위험 교량으로 판명된 6개 교량에 대하여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의 통행제한과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 재가설 공사를 시행할 것.	○ 재가설 대상교량 : 6개교 - 재가설완료 : 2개교(몽석교, 사지교) - 2004시행중 : 1개교(계동교) - 2005이후 시행계획 : 3개교 (오계소교량, 장야교,공수교) ○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도로 중기계획 우선순위에 반영 조기시행 방안 강구 - 재가설 시행시 까지 정기점검 강화 - 차량통행제한 시행(2~5톤) : 2003. 2.부터 실시 - 정기점검 확행 : 분기 1회 이상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 설 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22	하상정비사업 시행 철저 - 요 구 조선제의원	○ 하상정비 사업은 수해예방을 위하여 중요성을 계속 강조된 사항임에도 예산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향후 하상정비 사업은 장마가 오기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관련조치를 취할 것	○ 우기전 수해복구공사와 병행하여 대산천 및 가천천 일부를 준설하였으며 하상정비사업비 250백만원을 투입하여 가천천 하상정비공사외 3개소에 대하여 정비 완료 하였음.	완 결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 설 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23	성기 도수로 보완관련이행 철 저 - 요 구 박점용의원	○ 성기지내 도수로가 수해복구 사업 시행시 파손되었으나 적기에 보수되지 아니하여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였는 바, 빠른 시일내 완벽히 복구토록하고, 관련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	○ 사업기간 중 장비이동 등으로 인한 기존의 돌보 등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6.25일경 낙차보등 4개소에 대하여 보완 완료하여 현재 영농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완 결	